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6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어기구 • 박지원 • 강선우

이개호・황 희・박 정

허종식 · 소병훈 · 박수혂

문금주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 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 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 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법률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승선자명부"를 "승선자명부(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	5
어선에 <u>승선자명부</u> 의 사본을 3	승선자명부(전자적 형태
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로 작성된 명부는 제외한다)